KMA 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75 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백영기 [6574]/ 보험정책급여팀장 고영옥 [6581]/ 팀원 박상아 [6575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813-1916호

시행일자 2026. 5. 11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약가유연계약제 시행 관련 안내

1. 관련근거

가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부-1220(2026. 5. 8.)

2. 위 호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(보건복지부령 제1171호, ' 26.4.15.) 일부개정에 따라 약가유연계약제가 시행(' 26. 6.부터 적용)됨을 안내해온 바,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※세부내용 붙임 파일 참고)

3. 아울러, 동 개정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https://www.hira.or.kr , 기관소식 > HIRA소식 > 공지사항)에 게재되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.

(*의협 홈페이지(www.kma.org) '공지·뉴스-건강보험 고시 안내' 에도 안내되었음

#붙임

1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1부.
2. 약가유연계약제 시행 관련 안내문 1부.
3. 약가유연계약제 질의응답(Q&A)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